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5-2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박영훈 의원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예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증명발급 수수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7조, 안 별표2)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소 · 성명 · 연락처			

###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 5. 붙임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증명발급”을 “증명발급(「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진단서	1통	1,000	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
2. 사체검안서	1통	5,000	
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4. 사실확인증명원	1통	500	
5. 건강진단결과서	1통	6,000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u>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u>증명발급</u>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p> <p>② (생략)</p> <p>[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수수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진단서</td> <td>1통</td> <td>1,000</td> <td>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td> </tr> <tr> <td>2. 사체검안서</td> <td>1통</td> <td>5,000</td> <td></td> </tr> <tr> <td>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td> <td>1통</td> <td>300</td> <td></td> </tr> <tr> <td>4. 사실확인증명원</td> <td>1통</td> <td>500</td> <td></td> </tr> <tr> <td>5. 건강진단결과서</td> <td>1통</td> <td>6,000</td> <td>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진단서	1통	1,000	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	2. 사체검안서	1통	5,000		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4. 사실확인증명원	1통	500		5. 건강진단결과서	1통	6,000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p> <p>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 증명발급(「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수수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진단서</td> <td>1통</td> <td>1,000</td> <td>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td> </tr> <tr> <td>2. 사체검안서</td> <td>1통</td> <td>5,000</td> <td></td> </tr> <tr> <td>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td> <td>1통</td> <td>300</td> <td></td> </tr> <tr> <td>4. 사실확인증명원</td> <td>1통</td> <td>500</td> <td></td> </tr> <tr> <td>5. 건강진단결과서</td> <td>1통</td> <td>6,000</td> <td> <a href="#">「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a>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진단서	1통	1,000	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	2. 사체검안서	1통	5,000		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4. 사실확인증명원	1통	500		5. 건강진단결과서	1통	6,000	<a href="#">「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a>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진단서	1통	1,000	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																																														
2. 사체검안서	1통	5,000																																															
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4. 사실확인증명원	1통	500																																															
5. 건강진단결과서	1통	6,000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진단서	1통	1,000	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																																														
2. 사체검안서	1통	5,000																																															
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4. 사실확인증명원	1통	500																																															
5. 건강진단결과서	1통	6,000	<a href="#">「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a>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 관련법령 발췌사항

## 1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현행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①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단가로 적용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는 별표 1에 따른다.

-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보건기관단가)의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골밀도 검사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 감액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

처치에 한한다.

7.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은 제외한다.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방사선영상CD사본

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아가 12세 이하의 다자녀 가족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제9조(납부 및 정산)**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기타수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종목	기준	수수료	비고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1치아 당	5,000	제1,2대구치제외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	
방사선영상 CD사본	1매	3,000	
운동처방		무료	

[별표 2]

##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진단서	1통	1,000	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
2. 사체검안서	1통	5,000	
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4. 사실확인증명원	1통	500	
5. 건강진단결과서	1통	6,000	<b>수수료 50% 감액대상</b>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 재직(예정) 증명서 [별지]

## 재직(예정) 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대상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Birth Date
	주소	
재직(예정) 사항	소속(예정) 업소명	
	영업장 주소	
영업주 (대표자)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Birth Date
		성별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제2항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 귀하

### 안내 및 유의사항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되어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성명을 써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6,000원)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